

보도 일시	2023. 2. 16.(목) 06:00 2023. 2. 16.(목) 석간	배포 일시	2023. 2. 16.(목)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50)
		담당자	서기관 편해운 (044-202-7473)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23년 예산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 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율은 65.2%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37억원('22년) → 112억원('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기 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최초 허용 사업장	40만원	480만원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급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일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 고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서울고용센터	02-2004-7375	김해고용센터	055-330-6438
서초고용센터	02-580-4982	양산고용센터	055-379-2421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677	밀양고용센터	055-350-2804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22	진주고용센터	055-760-6761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12	통영고용센터	055-650-1814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405	거제고용센터	055-730-1912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14	대구고용센터	053-667-6741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391	대구강북고용센터	053-606-8062
인천고용센터	032-460-4634	대구동부고용센터	053-667-6907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724	경산고용센터	053-667-6852
인천서부고용센터	032-540-2061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479
부천고용센터	032-320-8950	대구달성고용센터	053-605-9545
김포고용센터	031-999-0952	칠곡고용센터	054-970-1905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836	포항고용센터	054-280-5053
구리고용센터	031-560-5860	경주고용센터	054-778-2526
남양주고용센터	031-560-1973	구미고용센터	054-450-3321
동두천고용센터	031-860-1795	김천고용센터	054-429-8907
양주고용센터	031-849-2318	영주고용센터	054-639-1134
고양고용센터	031-920-3961	문경고용센터	054-559-8253
파주고용센터	031-860-0421	안동고용센터	054-851-8065
수원고용센터	031-231-7850	광주고용센터	062-609-8659
용인고용센터	031-289-2211	광산고용센터	062-960-3209
화성고용센터	031-290-0828	전주고용센터	063-270-9235
성남고용센터	031-739-4945	정읍고용센터	063-530-7514
경기광주고용센터	031-799-2750	남원고용센터	063-630-3916
이천고용센터	031-644-3815	익산고용센터	063-840-6553
하남고용센터	031-730-7030	김제고용센터	063-540-8402
안양고용센터	031-463-0760	군산고용센터	063-450-0639
의왕고용센터	031-463-7478	부안고용센터	063-580-0517
광명고용센터	02-2680-1508	고창고용센터	063-580-0542
안산고용센터	031-412-6977	목포고용센터	061-280-0589
시흥고용센터	031-496-1915	해남고용센터	061-530-2912
평택고용센터	031-646-1288	여수고용센터	061-650-0158
오산고용센터	031-8024-9812	순천고용센터	061-720-9163
춘천고용센터	033-250-1929	광양고용센터	061-798-1915
강릉고용센터	033-610-1912	대전고용센터	042-480-6459
속초고용센터	033-630-1920	공주고용센터	041-851-8505
원주고용센터	033-769-0958	세종고용센터	044-861-8992
태백고용센터	033-550-8603	논산고용센터	041-731-8608
삼척고용센터	033-570-1906	청주고용센터	043-229-0703
영월고용센터	033-371-6254	천안고용센터	041-620-9519
부산고용센터	051-860-1914	충주고용센터	043-850-4034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242	제천고용센터	043-640-9323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956	보령고용센터	041-930-6255
창원지청고용센터	055-239-0964	서산고용센터	041-661-5603
마산고용센터	055-259-1537	제주고용센터	064-710-4460(제주시)
울산고용센터	052-228-1946		064-710-4494(서귀포시)